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1차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동의안은 2009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상기업에 제공할 부지를 매입하고자

○ 제265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은「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사업」의 매입토지 확정 등 사업변경과 일부재산을 우리 도가 유치하는 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으로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3. 주요내용

가. 재산의 취득 :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 변경

○ 위　　치 : 도내 3개 지역→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-1 등 39필지

○ 매입규모 : 343,108㎡ → 39필지 161,103㎡

※ 세부내역 : 붙임

○ 사업기간 : 2008.1～4 → 2008.1～2009.12

○ 사 업 비 : 10,000백만원 → 2,856백만원

나. 재산의 처분 : 유수기업 유치를 위한 재산매각

○ 위　　치 :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-1 등 5필지

○ 매각규모 : 70,909㎡(세부내역 : 붙임)

○ 매각시기 : 2009.6～7(2개월)

○ 매 수 자 : (주)케이테코 등 3개 기업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난 2007년 11월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(제265회 임시회 · 2007.11.2～11.9)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

확대조성[3]건의 변경과 확대조성한 토지 중 일부를 입주기업에 매각하는 내용임.

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은 당초계획 대비 매입면적은 343,108㎡에서 161,103㎡로, 매입지역은 3개군(보은군·영동군·단양군)에서 2개군(보은군·영동군)으로, 사업비는 100억원에서 2,856백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히 필요하다고 보았음.

유수기업 유치를 위한 재산매각은 매입한 토지 중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소재 70,909㎡를 입주기업체 (주)케이테코 등 3개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예정가격 17억원은 매입가격 9억3천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입주기업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음.

붙임 :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.

---

3)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공장용지를 사전확보하였다가 입주기업에 적기에 공급 목적으로 투자진흥기금(조성목표 100억원·조성액 60억원)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사업시작